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9 선고 2015가단112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6. 3. 9.

주 문

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 E, F에게,

(1)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2. 6. 접수 제29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2. 6. 접수 제29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 E, F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E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2. 6. 접수 제29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201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이지영

별지